2026. 11. 8.

나주 관련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의 사면에 관한 공지문

저의 선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서는 광주대교구의 입법권자의 자격으로(교회법 제391조; 제29조; 제1315조) 2008년 1월 21일 교령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excommunicatio latae sententiae)를 설정하셨습니다.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파문 제재를 자동 처벌로 부과받은 이들은 교회의 친교를 누리지 못하며 그 자체로 다른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교회법 제1331조 제1항). 또한 파문 제재를 부과받은 이들이 교회의 친교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에는 항명을 버리고 관할권자로부터 반드시 사면받아야 합니다(교회법 제1358조 제1항; 제1347조 제2항; 제1354-1355조).

이에 본인은 위에 언급된 광주대교구장 주교의 교령으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부과받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교회의 친교 안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으로나 관할권자의 수여로써 받은 모든 사제는 저의 선임 교구장께서 내리신 교령을 통해 자동 처벌로 부과된 파문 제재를 사면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교회법 제1354조 제2항).

2. 따라서 위의 교령을 통해 금지된 행위를 범의로 행하여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부과받은 신자들이 죄를 뉘우치며 항명을 버리고 교회와의 친교로 돌아오고자 할 때, 고해 사제는 그들의 회심을 고해성사 안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후, 적절한 보속을 주면서 파문 제재를 사면해 주고 사죄경을 외워줍니다. 사죄경을 바꿀 필요는 없고,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사면한다는 지향을 가지면 충분합니다(『고해성사 예식』, 부록 I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사면받은 자가 2008년 1월 21일 교령으로 금지된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임의적인 '경당' 과 '성모동산' 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또 한다면, 교령에 명시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다시 부과받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2026년 10 월 20일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나주 관련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의 사면>과 관련하여 전국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

의정부교구장 손희송 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청주교구장 직무대행 최광조 신부